

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·식생활 교육
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김홍구 의원 외 25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홍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은 중요하며, 올바른 식습관 개선으로 질병예방, 건강한 상태유지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학생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

- 본 조례는 영양·식생활 교육의 지속적·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다. 주요내용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-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- 학교의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도·감독, 실태조사,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~제10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은 중요하며, 올바른 식습관 개선으로 질병예방, 건강한 상태유지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학생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
- 영양·식생활 교육의 지속적·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,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3조는 교육감은 영양·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·시행 및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
- 안 제4조는 교육감은 매년 영양·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학교교육계획에 영양·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함
- 안 제5조는 영양·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는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·식생활 교육 운영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7조는 학교의 영양·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8조는 올바른 영양·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·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안 제9조는 학교의 영양·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10조는 영양·식생활 교육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
- 안 제11조는 교육감은 영양·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학생의 영양·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,
 - 학생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교육계획에 영양·식생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고,
 - 영양·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교육체험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학교현장의 영양·식생활 관련 교육지원,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연수 운영, 학부모 및 지역주민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.

-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먹거리가 다양화됨에 따라 영양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, 학생들이 올바른 영양·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6개 시·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※ 조례제정 : 6곳(부산, 인천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남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